

유엔 인권위원회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

대한민국의 네번째 정기 보고서에 관한 최종 견해*

1.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위원회)는 2015년 10월 22일과 23일에 열린 제 3210차 및 3211차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 회의(CCPR/C/SR.3210 와 CCPR/C/SR.3211)에서 대한민국이 제출한 네 번째 보고서(CCPR/C/KOR/4)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2015년 11월 3일에 열린 제 3226차 회의(CCPR/C/SR.3226)에서 다음과 같이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A. 서문

2. 위원회는 비록 대한민국 정부가 조금 늦게 제출했지만 네 번째 보고서를 제출한 것과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고기간 동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하 '규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급 대표단과 건설적 대화를 재개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 대표단의 구두 답변과 서면 보충 자료를 포함하여 '질의 목록(list of issues)'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CCPR/C/KOR/Q/4/Add.1)에 감사한다.

B. 긍정적 측면

3.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취한 아래와 같은 법적, 제도적 조치를 환영한다.:

(a)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도입;

* 본 위원회의 115차 회기에서 채택됨(2015년 10월 19일 - 11월 6일).

- (b) 2013 년, 난민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도입;
 - (c) 2012 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도입;
 - (d) 2012 년, 형법 제 297 조에 정의된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한 것;
 - (e) 2009 년,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f) 2005 년에서 2006 년까지의 젠더 차별적인 법률의 확인 및 그에 따른 총 385 개 법 규정들의 개정(개정 절차 2009 년에 완료);
 - (g) 2007 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하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입;
 - (h) 2007 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도입
4.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2008 년 12 월 11 일자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것을 환영한다.
 5.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2007 년 4 월 2 일, 자유권 규약 제 14 조 5 항의 유보를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

C. 주된 우려 및 권고 사항

선택의정서에 따른 견해

6.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여전히 선택의정서에 따른 위원회의 견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없다는 점에 우려를 가진다. 특히,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견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수많은 사건들(제 2 조)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7. 대한민국 정부는 위원회의 견해에 충분한 효력을 부과하는 메커니즘과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고 이로써 ‘규약’을 위반한 모든 사건들에 유효한 구제 수단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위원회가 내린 견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8.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 선출 및 임명 과정에서 독립성, 투명성, 그리고 참여적 절차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추진한 활동들을 인지하고 있다. 동시에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사항들을 아직 법제화 하지 않았음에 우려를

표명한다. 법제화는 파리 원칙 (제 2 조)에 부합하여 국가인권위의 전적인 독립성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9.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하고 임명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가 보장 되도록 필요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해당 법에는 독립적인 후보 추천 위원회 설립과 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과 인권

10. 위원회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관련 인권 기준들을 위반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구제책에 (피해자들이)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제 2 조)
11.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 영토 내를 비롯하여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동 규약에 명시된 인권 기준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명백히 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및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별금지

12. 위원회는 대한민국 내에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개의 개별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인종 차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바이다. (제 2 조, 26 조)
13. 대한민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행위자들에 의한 직접·간접 차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14.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 (a)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소수자(LGBTI)에 대한 폭력, 혐오발언과 같은 심각한 차별적 태도
 - (b)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 조의 6

- (c)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전환치료' 행사에 대한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의 장소 대관 인가
- (d)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는 성교육 표준안 개정안
- (e)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법적으로 인정 받는 것을 제약하는 과도한 요구사항 (규약 2 조, 17 조 그리고 27 조)

15. 대한민국 정부는 소위 '전환치료'의 선전, 혐오발언,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강화해야하며, 균형법 제 92 조의 6 을 폐지하고, 민간단체의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며,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의 법적 인정을 용이하게 해야한다. 또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

16.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 (a)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및 젠더에 기반한 고정관념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
- (b) 정책결정 직위에서 여성의 특히 낮은 비율,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 남녀 간의 특히 큰 임금격차;
- (c) 아동 수당에 있어서 입양 부모에 비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을 포함해 미혼모에 대한 빈번한 사회적 낙인 및 차별 (3 조 및 26 조)

17. 대한민국 정부는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젠더 고정관념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정과 사회에서의 남녀 평등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시행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 (a) 일시적 특별조치를 포함하여 민간 및 공공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b)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임금격차를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가정이 있는 직원을 정규직화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고용에서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포함한다.
- (c)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특히 교육, 고용 및 주거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미혼모들이 입양 부모와 동등한 아동 수당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

18. 위원회는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부부 강간이 현행 형법하에서 처벌 가능한 범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 사건들에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동시에 이 사실들에 주목한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피해자들을 적절히 보호하지도 못하고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충분히 전달하지도 못한다. (제 3 조, 7 조)

19.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상황에서의 부부강간을 명백히 범죄화하고, 모든 형태의 강간을 협박이나 폭력 대신 동의의 부재라는 관점에서 정의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모든 유형과 현상을 방지하고 다루기 위하여 통합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경찰, 사법부, 검찰, 지역 대표들을 대상으로 가정 폭력의 심각성 및 가정 폭력이 피해자들의 삶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법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가정폭력과 부부강간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들이 기소되도록 하며, 유죄 시 적절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피해자들이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피해자들이 분쟁 해결 메커니즘으로 대체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방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반테러 조치

20. 위원회는 2 개의 반 사이버 테러 관련 법안을 포함하여 총 5 개의 반테러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공한 정보로는 현재의 잠정적인 테러의 정의, 또는 계류 중인 법안 상의 테러의 정의가 규약에 완전히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사이버 테러의 정의가 특히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며 우려를 표명한다. (9, 14, 15 및 17 조)

21. 대한민국 정부는 반 테러 법률과 관행이 규약에 완전히 부합하고, 테러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비차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테러 행위가 명확하고 한정된 방식으로 정의되도록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채택된 법률이 명백하게 테러로 간주되는 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테러에 관한 적절한 정의는 '테러방지과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반 테러 관련 10 개 분야 모범사례 보고서 (A/HRC/16/51)의 29 문단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66 호 (2004) 3 문단을 참고할 수 있다.

사형제

22. 위원회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여전히 상당수의 사람이 사형 확정자라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제 6 조).

23.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사형 선고형을 징역형으로 감형하는 것은 물론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사형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 차 의정서(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채택 25 주년을 맞아 해당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살

24.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살을 예방하고 그 수를 줄이기 위하여 채택한 방안들에 주목하면서도, 특히 높은 자살율, 특히 20 대와 30 대의 젊은 층에서 자살이 제 1 의 사망 원인이라는 점, 노년층과 군대 내에서는 물론 여성들에게도 제 2 의 사망 원인이라는 점을 우려한다. (제 2 조, 6 조)

25. 대한민국 정부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다루며, 그에 따라 자살 방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고문 및 부당한 대우

26.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고문의 정의에 해당하는 행위들, 특히 정신적인 고문들이 온전히 처벌되도록 적절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통상적인 법 시스템 하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경찰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고문과 부당한 대우의 혐의를 수사할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제 7 조).

27. 대한민국 정부는 규약 제 7 조 및 다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규범들과 충분히 일치되도록 고문의 정의를 포함하여 형법을 개정하여야 하며, 고문은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고문과 부당한 대우의 사건들에 있어서 수사자와 잠재적 가해 혐의자들 사이에 어떠한 기관 혹은 위계질서 상에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기구에 의하여 적절히 조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재할과 보상을 포함한 구제책 뿐만 아니라, 그 중대성에 따라 그와 같은 행위의 가해자와 공범들에 대하여 일반 형사법원에서 기소와 유죄 선고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정신과 시설에서의 비자발적 입원

28. 위원회는 대한민국 내 비자발적 입원의 근거가 지나치게 광범위 하고, 구금된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구금되며, 비자발적 입원에 대한 보호 절차가 불충분하다는 점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29. 대한민국 정부는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소지가 있는 경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 필요성과 비례성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정신과 감금을 이뤄지도록 하며, 적당한 기간 동안 최대한 짧게, 최후의 수단으로만 적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비자발적 입원의 절차에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고, 어떤 대표자라도 개인의 이익과 소망을 진정으로 대표하고 방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 같은 감금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적절한 절차와 실질적인 보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군대 내 폭력

30. 위원회는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 성적, 신체적, 언어적 폭행 사건이 많다는 점과 그 중 오직 소수의 사건만이 기록되고 기소된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제 7 조)

31. 대한민국 정부는 군대 내 학대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온전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권 침해 가해자가 재판에 회부되고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단지 가해자를 복무로부터 제외하거나 보직해임시키는 것은 폭력 범죄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아니다. 제기된 진정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하고 피해자와 증인들은 보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2. 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피구금자의 수사 중 변호인에 대한 접근이 특정 상황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특정 상황이 충분히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고, 부적절한 변호인의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는 것과 함께 이 사실에 주목한다.
33. 대한민국 정부는 피구금자의 수사 중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어떤 상황 하에서도 제한되지 않도록 필요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구금시설 내 상황

34.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우려를 표명한다.
- (a) 구금시설 내 과밀 수용 및 구금시설 외부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 제한;
 - (b) 구금시설 내에서의 보호장비 사용이 주로 징벌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보고 및 그 사용의 종료시점이 교도관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점;
 - (c) 최대 30 일까지 부과될 수 있는 독방구금이 수용자에 주어지는 징벌의 가장 흔한 형태라는 보고 및 징벌의 유형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이 교도소장에 의해 임명된다는 점 (제 10 조)
35. 대한민국 정부는:
- (a) 독방구금이 가장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고 엄격히 제한된 기한 동안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징벌위원회의 위원이 독립 기관으로부터 임명되도록 보장하고;
 - (b)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99 조 제 2 항(역자 주 :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의 이행 여부가 반드시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장비의 사용이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를 따를 수 있도록 보장하고;
 - (c) 대한민국 정부의 구금시설 시스템이 규약과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에 부합하도록 구체적 단계를 밟아나아가야 한다.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구금

36. 위원회는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 도착한 즉시 “북한이탈주민센터(역자 주 : 구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되며, 해당 센터에 6 개월까지 수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는 것과 동시에 이 사실에 주목한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제공한 정보 즉 피구금자들이 (기관 내) 인권보호관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도, 본 위원회는 피구금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독립적인 심의 없이 제 3 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에 대하여 더욱 우려하는 바이다. (제 9 조, 10 조, 13 조)

37.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최단 기간만 구금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수사 중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허락될 뿐만 아니라, 수사 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개인이 제 3 국으로 추방되기 전에 충분히 독립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일시적 집행 정치 효과를 가지는 심의를 허용하는 명백하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난민신청자의 구금

38.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2013 년, 난민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을 환영하는 한편, 이주구금의 기간에 법적 상한이 없는 것과 이주 아동의 구금, 그리고 이주 구금 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우려한다. (제 9 조, 24 조)

39.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구금의 기간을 제한해야 하며, 구금이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 35 번에 부합하도록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뒤에,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주구금시설의 생활 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정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40.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신매매의 송출국, 경유국, 목적국이며, 인신매매범들에 대한 기소 및 유죄판결이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 (a) 상당수의 농축산 노동자가 강제노동을 포함한 착취의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해 대한민국에 온다는 것과 고용허가제 하의 이주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5 조에 의해 제한된 조건에서만 고용주가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 (b) E-6 연예휴행비자로 입국하는 여성들이 종종 성산업에 예속된다는 점;

- (c) 대한민국 정부의 적절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구금되고 강제송환 된다는 점;
- (d) 형법상 인신매매의 정의가 오로지 매매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계약 사기를 통하여 이주노동자들을 모집하고 착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제 3 조, 7 조, 8 조)

41. 대한민국 정부는 특별히 인신매매의 수요를 근절하는 것을 통하여 인신매매를 필사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또한:

- (a) 고용허가제 하의 노동자들이 고용주 변경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할 것;
- (b) 노동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c) E-6 연예행행비자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사용되지 않도록 규제할 것;
- (d) 인신매매의 정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피해자로서 필요한 모든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사적 통신에 대한 사찰, 감시 및 감청

42.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3 조제 3 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은 이유로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그리고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감청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제 17 조 및 제 21 조).

43.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감시를 포함해 모든 감시가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특히 이용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해야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하며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44. 위원회는 군복무에 대한 민간 대체복무가 부재한 상황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지속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에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병역거부자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 사실에 주목한다. (제 18 조)

45. 대한민국 정부는:

- (a) 병역을 면제받을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부를 즉시 석방할 것
- (b) 병역거부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며,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 (c)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인정되도록 하며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할 것

형법 상의 명예훼손

46. 위원회는 정부의 행위를 비판하거나 기업의 이익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기소하는데 있어서 형법 상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장기 징역형을 포함해 법 상의 형량이 가혹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또한 진실인 연사마저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구사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 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제 19 조).
47. 대한민국 정부는 명예훼손의 경우 민법에 의한 제재가 가능하므로 비범죄화를 고려해야 하며, 자유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한 형벌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장 심각한 사건들에만 국한해서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진실을 항변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조건이 부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비판에 대한 관용의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에 따른 기소

48.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계속되는 기소, 특히 비합리적으로 대략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모호한 제 7 조에 따른 기소에 우려를 표한다. 이처럼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소는 공적인 대화에 있어서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수많은 사건들에 있어서 불필요하고 균형에 맞지 않게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검열의 목적으로 점점 더 사용되고 있음을 우려하는 동시에 이 사실을 지적한다.(제 19 조)
49.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34 번과 견해 (CCPR/C/79/Add.114, para. 9 (1999))를 상기하며, 대한민국 정부에게 “조약은 단지 사상이 적국의 것과 일치하거나, 적국에 대한 공감을 초래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보안법 제 7 조를 폐지하여야 한다.

통합진보당의 해산

50. 위원회는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반 혐의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UPP) 해산결정이 주로 통합진보당 당원이 북한의 이념을 선전하였다는 혐의에 기반한다는 점에 염려한다. 해당 당원들은 이미 국가보안법 7 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제 19 조, 22 조)
51. **정당의 해산이라는 것이 특별히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성격의 결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그러한 방법이 최후의 수단으로, 가장 엄격한 규제 하에서 사용되도록, 그리고 비례의 원칙을 구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52. 위원회는 경찰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사례,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의 심각한 제한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자와 인권옹호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시위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이들에게 형법을 빈번하게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제 7, 9 및 21 조)
53.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이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집회의 자유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규약 제 21 조에 엄격하게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력사용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이에 따라 경찰관을 교육해야 한다.**

결사의 자유

54. 위원회는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해 가해지는 부당한 제약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조합원 중 해고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55. **대한민국 정부는 규약 제 22 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과 해고자들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생등록

56. 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이 자녀들의 출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국 대사관에 가야 하며 이는 주로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격 보유자 혹은 난민에게는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이 사실에 주목한다. (제 24 조)

57.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의 출생등록이 부모의 법적 상태 그리고/혹은 출신국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들에게 허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58. 대한민국 정부는 규약 및 제 4 차 정기 보고서와 본 최종견해 문서를 사법, 입법, 행정 당국, 국내에서 활동 중인 시민단체 혹은 비정부 기관,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널리 배포하여야 한다.

59. 위원회의 의사절차규칙 제 71 조 5 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1 년 내에 15 번(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 45 번(양심적 병역거부) 및 53 번(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단락에 있는 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이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60.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본 위원회의 권고와 규약 전체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차기 정기 보고서를 2019 년 11 월 6 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보고서를 준비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및 비정부 기구들과 널리 협의할 것을 요청한다. 유엔 총회 결의안 68/268 에 따라, 그 보고서의 분량은 21,200 단어로 제한한다.